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김상훈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중 ‘고급형 택시’의 경우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시·도지사에게 운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

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고급형 택시요금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